##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91

발의연월일: 2021. 11. 12.

발 의 자:이종성・김영식・김용판

이종배 · 성일종 · 김예지

임이자 · 조명희 · 박성중

정운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의 불명확한 규정,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음. 또한 일몰제로 운영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 참고사항

이 법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32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건강보험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
	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
	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해
	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	<u>&lt;삭 제&gt;</u>
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	
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	
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	
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	
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	

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